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차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63호)

2024. 11.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명확화(안 제4조)	2

I.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차지호의원 등 10인

2. 제안일자 : 2024년 8월 22일

3. 회부일자 : 2024년 8월 23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 중 인도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4조).

Ⅲ. 검토의견

1.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명확화(안 제14조)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제시된 사항 중 인도주의 기본원칙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u>국제적·경제적 위상</u> 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 ----- ----- <u>국제사회에서의 역할</u> ----- ----- ----- ----- -----.

UN OCHA(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는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으로 인도주의(Humanity), 중립(Neutrality), 공정(Impartiality), 독립(Independence)을 들고 있음.

인도주의 원칙이란 인간의 생명 구조를 위한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중립의 원칙은 지원 행위가 분쟁 양 당사자의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을, 공평의 원칙은 차별 없이 필요에 근거하여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독립의 원칙은 인도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

적, 경제적, 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말아야 할 것을 각각 의미함.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에서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제시된 사항 중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는 것은 자칫 인도적 지원 행위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에 맞추어 인도적 지원의 원칙에 더욱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외교부는 현행법상의 ‘국제적·경제적 위상’ 표현은 우리나라가 어떠한 국제적·경제적 목적을 달성코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중견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인도적 지원의 독립성 원칙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ODA 추이 >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관계부처 합동	143,200	167,700	193,000	316,300	403,600	896,500
외교부	86,119	100,343	124,094	236,641	299,367	740,111

※ 자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문 의 처
02) 6788-5268